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동 개정조례안은 2009. 1. 21.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2009. 1. 29.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개정사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통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공직자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3.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제59조

4.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함(안 제5조제3항).

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표현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안 제7조, 제1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8. 9. 18.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2008. 11. 5.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종교적 중립 조항이 새롭게 삽입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조례안」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시달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최근 일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국민통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종교편향 금지를 규정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종교’ 이외에도 성별,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학력, 병력 등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종교편향 금지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밝힌 다른 차별행위도 모두 포함해야 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음.
- 동 조례안 제13조(근무시간)는 현행조례에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토요일의 총무시간을 13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가 시행된 지 이미 3년이 경과되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우에도 이미 2005. 6. 30에 관련조항이 개정되었는바,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참고자료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현황

2009.1.16 현재

지 역	개정 추진 현황	일 자	비 고
서 울	교육위 의결	2008.12.22	
부 산	교육위 의결	2008.11.19	
대 구	교육위 부의 예정	2009.2	
인 천	법제심의 예정	2009.1말~2초	
광 주	교육위 의결	2008.12.12	
대 전	조례 개정	2009.1.2	
울 산	조례 개정	2008.12.24	
경 기	조례 개정	2009.1.2	
강 원	검토 중		
충 남	교육위 의결	2009.1.15	
충 북	검토 중		
전 남	검토 중		
전 북	조례 개정	2009.1.13	
경 남	법제심의 완료	2008.12	
경 북	교육위 의결	2008.12	
제 주	조례 개정	2008.12.31	

(다음 페이지에 계속)